

정춘수동상연내철거에대한청원

검 토 보 고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정춘수 동상 연내 철거에 대한 청원

## 검토 보고

### 1. 청원현황

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 : 1995. 9. 26. 제 95-1 호

나. 청원인 :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60-8

정진동의 3,638명

다. 소개 의원 : 김춘식 의원

라. 청원요지

해방 50년을 맞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자 청주 3.1공원내에 있는 친일파 정춘수의 동상을 연내 조속히  
철거를 요망하는 내용임.

마. 청원사항

우암산 3.1공원내의 정춘수동상 연내 철거 요망

### 2. 검토의견

가. 내용 : 정춘수 동상 연내 철거요망

나. 검토의견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철거요망 대상의 동상은 우암산 3.1공원 내에  
세워져 있는 들판선언서 서명 민족대표 33인중 충북출신 6명의 동상중  
하나로 최근 논란의 대상인 정춘수 동상 철거요망의 물결은 각계각층  
의 고충자료 및 도민여론에 의해 차단과글되어 오고 있는 내용으로서

철거론의 의견제시 및 심의결정에 앞서 설립당시의 조성목적과 취지  
를 말씀드려본다면

이는 당시 청주시에서 민족대표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정통성의 수호와 올바른 민족사와 역사관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현 우암산 중턱에 공원을 조성한바 그이름을 3.1공원이라  
명명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바 있는 민족대표 33인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중 충북출신 인사 6명의 동상 건립을  
1979년 충청북도에서 발주하여 1980. 8. 15일 준공하게 되었고,  
현재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동상건립의 근본취지는 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의 역사를 기리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원대상인 정춘수 동상의 철거 문제에 있어서 독립기념관  
전시실의 「컴퓨터 터치스크린」기록내용을 빌어보면 「1938년 민족  
주의자들을 박명 전향시킬 목적으로 검거에 착수하였는데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었다. 일제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1938년  
9월 3일 “전향성명서”를 내고 풀려나 부일협력 활동에 이용당하게  
되었다. 이후 친일행각을 계속하다가 광복이 되고 한국전쟁에 피난  
의 길에 올라 1951년 10월 27일 피난지에서 서거하였다.」라는 내용  
의 친일행적이 있다고는 하나

당초 3.1공원 동상건립은 독립투사나 애국지사의 동상을 건립한 것이  
아니고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자라는 위치에서 건립  
한 것으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동상철거를 주장하는 친일행적과는 별개의 문제로  
조성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과 건립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난 8월 독립기념관 측에서도 최린, 박희도를 비롯해 정춘수를  
변절친일파로 규정하는 결론에 도달하여 독립기념관내 사진등을 철거  
한바 있으며 각계각층의 고증자료가 입증되고 있는 작금에 있어

3.1공원내의 동상에 대한 철거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의 계속적인 동상철거 요구에 대해 철거의  
결정문제는 정춘수의 후손들에게도 세태적 물결에 의해 가문에 누를  
끼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되며,

문중에서도 양보와 이해로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민족의 얼을 되찾고 여러위인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등에  
대해 현재를 살아가는 후세인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 또한 절대적  
으로 중요한 일 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만으로 동상이 철거될 수는 없으므로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다른방법의 하나로 동상의 철거보다는 동상은 현재대로 존치시  
키되 현재의 기록에 공인된 자료에 의해 친일행적을 추가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는바

정춘수동상의 철거 여부는 지역적 문제로 처리하기 보다는 거시적  
안목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의견제시와 제반  
자료를 검토하고 공론하에 본 청원의 건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